

해외진출기업 조사표 기입 안내



목 차

| | |
|-------------------------------|----|
| 1. 조사의 개요 | 1 |
| 2. 주의사항 | 3 |
| 3. 조사표 기입 방법 | 4 |
| 별표 1 업종 분류표 | 10 |
| 별표 2 국가 분류·지역 분류표, 국가별 통화 환산표 | 10 |
| 별표 3 식품의 대상범위 | 10 |

1.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이 조사는, 일본 기업의 식품에 관한 해외사업활동의 실태를 파악하여, 농림수산성에서 실시하는 ‘동아시아 식품산업활성화 전략(동아시아 식품산업 공동체 구상)’의 추진 및 금후 식품산업정책의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2) 조사의 법적 근거 및 비밀 보호

이 조사는, 통계보고조정법 제4조에 따른 총무대신의 승인을 받아, 농림수산성이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조사로 인해 신고된 기입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비밀이 보호됩니다. 따라서 통계 목적 이외로 사용되는 일은 없습니다.(통계법 제14조)

(3) 조사 대상

2008년 3월말 현재, 동아시아 지역(중국, 대만,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브루나이 및 인도의 14개국·지역)에 현지법인을 소유하고 있는(조업하고 있는)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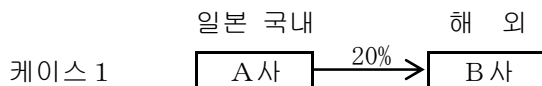
(4) 현지법인의 정의

동아시아 지역에서 식품을 취급하는 현지법인으로, 이하의 외국법인이 이 조사의 대상입니다.

또한,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총칭하여 ‘현지법인’이라 부릅니다.

- ① 일본측 출자비율 합계가 10% 이상인 외국법인(자회사-케이스 1 및 2)
- ② 일본측 출자비율 합계가 50% 초과(50%는 포함하지 않음)한 자회사가 50%를 초과한 출자를 행하고 있는 외국법인(손자회사-케이스 3 및 4)
- ③ 일본측 모회사의 출자와 일본측 출자비율 합계가 50%를 초과한 자회사의 출자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외국법인(손자회사-케이스 5)

<자회사 대상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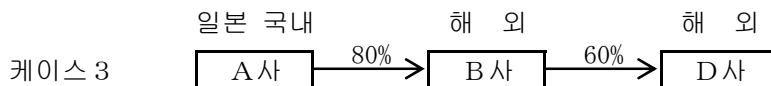


이 경우, A사로부터 B사로의 출자비율 합계가 10% 이상이므로, B사는 조사 대상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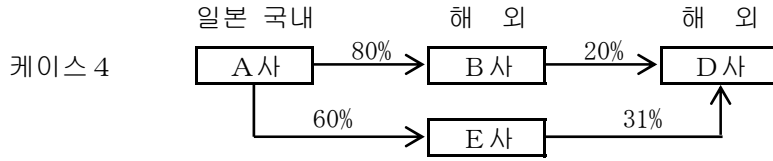


이 경우, A사와 C사로부터 B사로의 일본측 출자비율 합계가 10% 이상이 되어 있으므로, B사는 조사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A사가 회답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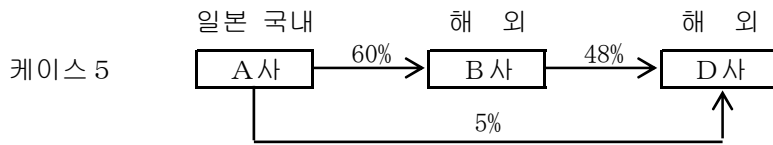
<손자회사 대상 예>



이 경우, A사로부터 B사로의 출자비율이 50%를 초과하고 있으며, 아울러 B사로부터 D사로의 출자비율도 50%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D사는 조사 대상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20+31=51\%$ 가 되어, D사는 조사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도, D사로의 합계 출자비율이 50%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D사는 조사 대상이 됩니다.

(5) 조사 방법

이 조사는, 농림수산성에서 본사 기업으로 조사표를 우편으로 배포하여, 각 본사 기업 쪽에서 기입, 반송(우편 또는 FAX)해 주시는 조사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농림수산성 대신관방통계부 직원이 전화 등으로 내용을 조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6) 조사표의 제출기한

조사표는 11월 14일까지 반드시 도착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비밀 보호를 위해 회신봉투에는 회사명 등을 기입하지 마십시오.

(7) 조사 결과의 공표

이 조사는, 업종별, 동아시아 지역·국가별 등으로 집계하여, 농림수산성 대신관방통계부에서 분석, 공표하겠습니다.

또한, 집계 항목에 따라, 기업수가 1사 또는 2사의 경우, 및 3사 이상이어도 계산에 따라 1사 또는 2사의 수치가 산출될 경우에는, 비닉으로 하여 「x」로 표기합니다.

2. 주의 사항

(1) 조사 시점 및 조사 연도

이 조사의 조사 시점은, 2008년 3월 31일 현재, 연도간 실적은 2007년도에 대해서 기입해 주십시오.

가 1년 결산의 경우

2008년 3월 31일 또는 그 이전의 가장 가까운 결산일을 2007년도말로 해 주십시오.

나 반년 결산의 경우

2008년 3월 31일 또는 그 이전의 가장 가까운 결산일을 2007년도말로 하고, 연도간 실적에 대해서는 당해기의 전기와 합하여 상반기, 하반기의 합계를 기입해 주십시오.

다 결산기의 변경 등

결산기의 변경 등에 의해 연도간 실적을 정확히 기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적당하게 귀사의 구분에 따라 기입하셔도 됩니다.

(2) 수치 등의 기입

가 단위 미만은 반올림하여 주십시오.

나 각 난의 수치는 오른쪽 맞춤으로 1칸에 1자씩 기입해 주십시오.

다 정확한 수치의 산출이 현저하게 곤란할 경우에는 개수를 기입해 주십시오.

라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3) 금액의 엔환산

가 금액은 모두 엔화를 기준으로 표시하여, 백만엔 단위 미만을 반올림하여 주십시오.

나 타국 통화의 엔환산은 '별표 2 국가 분류·지역 분류표, 국가별 통화 환산표'에 따라 행해 주십시오.

다 정확한 금액의 산출이 현저하게 곤란할 경우에는 개수를 기입해 주십시오.

(4) 조사표의 양식 및 제출

조사표의 제출은 원칙적으로 일본어판으로 부탁드립니다.

현지법인의 참고 자료로서 외국어판(영어, 중국어, 한국어의 3개국어판)의 조사표 및 조사표 기입 안내를 아래 농림수산성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므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어판으로 기입하신 경우에는 그것을 제출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금액에 대해서는 엔환산으로 기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외국어판에 대해서 책자(용지)로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송부해 드릴 테니, 필요하시면 표지 '조사표를 보내는 곳 및 문의처'로 연락을 주십시오.

<http://www.maff.go.jp/j/tokei/syohi/sankatu/> (농림수산성 HP)

농림수산성 (秘) (이 난은 농림수산성에서 기입합니다.)

| | | | | | | |
|--------|----------------|------------------------------------|---|---|---|---|
| 총무성 승인 | No.2 7 4 0 2 | 2008년 식품산업 활동 실태조사 해외진출기업 조사표 A | □ | □ | □ | □ |
| 승인기한 | 2009년 1월 31일까지 | | | | | |

○ 이 조사는, 농림수산성이 산·학·관 연대 아래 임하는 ‘동아시아 식품산업 활성화 전략(동아시아 식품산업 공동체 구상)’의 추진 및 금후 식품산업 정책의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 이 조사는, 농림수산성이 통계보고조정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총무대신의 승인을 받은 승인통계로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 이 조사로 인해 보고 받은 기입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비밀이 보호되고, 통계를 작성하는 데에만 사용되며, 신고자에게 이해관계를 생기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은 없습니다.

○ 이 조사의 조사시점은, 2008년 3월 31일 현재로 기입해 주십시오. 연도 실적은 2007년도에 대해 기입해 주십시오.

○ 금액은 모두 엔화를 기준으로 표시하여, 백만엔 미만을 반올림하여 주십시오.

○ 기입에 대해서는 ‘조사표 기입 안내’를 참조해 주십시오.

(기입해 주신 내용에 대해 조회를 부탁드릴 경우가 있습니다. 기입자의 연락처를 기입해 주십시오.)

(소속부서명) _____ (기입자명) _____

1 귀사가 소유하는 해외 현지법인으로, 동아시아 지역 ※1에서 식품을 취급하는 현지법인은 있으십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표를 해 주십시오.

1 있음 2 없음 **설문은 이상입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 2, 3 (뒷면)에 대해 기입해 주십시오.

※1 동아시아 지역이란, 중국, 대만,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브루나이 및 인도의 14개국·지역을 말합니다.

2 본사기업(국내)의 개요 ※국내의 본사기업에 대해 기입해 주십시오.

| | | | | | | | |
|-------------|----------------------|----------|-------|-------|-------|-------|---------|
| 업종분류 | 해당되는 번호에 ○표를 해 주십시오. | | | | | | |
| | 1 식료품 제조업 | 2 음료 제조업 | 3 도매업 | 4 소매업 | 5 음식점 | 6 숙박업 | 7 기타 업종 |

자본금 해당되는 번호에 ○표를 해 주십시오.

※출자시(또는 증자시)의 환율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여 환산한 금액에 해당되는 년에 ○표를 기입해 주십시오.

| | | | | | | |
|------------|----------------------|------------------|-----------------|------------------|--------------------|------------|
| 자본금 | 해당되는 번호에 ○표를 해 주십시오. | | | | | |
| | 1 5천만엔 미만 | 2 5천만엔 이상~1억엔 미만 | 3 1억엔 이상~3억엔 미만 | 4 3억엔 이상~10억엔 미만 | 5 10억엔 이상~100억엔 미만 | 6 100억엔 이상 |

【뒷면에 계속됩니다】

조사 및 조사표 기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문의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입내용의 조회처 난

기입해 주신 내용에 대해 조회를 부탁드릴 경우의 연락처가 되겠습니다.

※기업(회사)명은 비밀 보호를 위해 기입하지 마십시오.

- 소속부서명
조사표를 기입해 주신 분이 소속하는 부서명을 기입해 주십시오.
- 기입자명
조사표를 기입해 주신 분의 성함을 기입해 주십시오.

1 조사대상 현지법인의 유무

이 항목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식품을 취급하는 현지법인의 유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식품을 취급하는 현지법인을 소유하는 기업

「1. 있음」에 ○표를 해 주십시오.

다음 설문 2 본사기업(국내)의 개요 및 3 동아시아 지역에서 식품을 취급하는 현지법인의 상황에 대해서 기입해 주십시오.

◆동아시아 지역에서 식품을 취급하는 현지법인을 소유하지 않는 기업

「2. 없음」에 ○표를 해 주십시오.

설문은 이상입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조사에 있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식품을 취급하는 현지법인의 전체수를 파악하려 하므로, 번거로우시겠지만 반신용 봉투에 넣어 반송해 주십시오.

2에 대해서는 국내 본사기업에 대해서 기입해 주십시오.

업종분류

기입에 대해서는 ‘별표 1 업종 분류표’를 참고로 하여 해당되는 업종 난에 ○표를 기입해 주십시오.
또한, 업종이 여러 갈래에 걸친 경우는, 가장 판매액이 높은 업종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자본금(또는 출자금)

귀사의 불입필 자본금 액수, 또는 출자금 액수에 해당되는 난에 ○표를 기입해 주십시오.

문 3은 동아시아 지역 *1 에서 식품을 취급하는 현지법인 *2 의 활동상황에 대해서 기입해 주십시오.

- *1 동아시아 지역이란, 중국, 대만,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브루나이 및 인도의 14개국·지역을 말합니다.
- *2 현지법인의 정의는, '조사표 기입 안내'를 보십시오.

3 동아시아 지역에서 식품을 취급하는 현지법인의 상황

* 현지법인 1개 회사마다 기입해 주십시오. 2개 회사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경우는, '해외진출기업 조사표B'를 사용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또한, 일본측 출자자가 복수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일본측 출자비율이 최대인 본사기업(동일출자의 경우는 간사기업)이 기입해 주십시오.
 따라서, 일본측의 출자비율이 최대가 아닌 본사기업(동일의 경우는 비간사기업)은 그에 대한 현지법인의 기입은 필요없습니다.

| | | | |
|-----------|-------------------------------------------------------------------------------------|----------------------|-------------------|
| 현 지 법 인 명 | * 영문 표기를 아실 경우에는 영문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 | |
| 국 가 분 류 | 해당되는 번호에 ○표를 해 주십시오. | | |
| | 1 중국(홍콩 제외) | 2 홍콩 | 3 대만 |
| | 4 대한민국 | 5 싱가포르 | 6 말레이시아 |
| | 7 태국 | 8 인도네시아 | 9 필리핀 |
| | 10 베트남 | 11 라오스 | 12 캄보디아 |
| | 13 미얀마 | 14 브루나이 | 15 인도 |
| 업 종 분 류 | 해당되는 번호에 ○표를 해 주십시오. | | |
| | 1 식료품 제조업 | 2 음료 제조업 | 3 도매업 |
| | 4 소매업 | 5 음식점 | 6 숙박업 |
| | 7 기타 업종 | | |
| 자 본 금 | 해당되는 번호에 ○표를 해 주십시오. * 출자시(또는 증자시)의 환율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여 환산한 금액에 해당되는 난에 ○표를 기입해 주십시오. | | |
| | 1 5천만엔 미만 | 2 5천만엔 이상 ~ 1억엔 미만 | 3 1억엔 이상 ~ 3억엔 미만 |
| | 4 3억엔 이상 ~ 10억엔 미만 | 5 10억엔 이상 ~ 100억엔 미만 | 6 100억엔 이상 |

※ 3 기입에 대한 유의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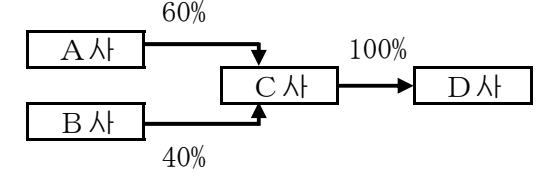
조업하는 현지법인 중, 동아시아 지역에서 식품을 취급하는 현지법인 모두에 대해, 현지법인 1개 회사마다 기입해 주십시오.
 또한, 복수(2개 회사 이상)의 현지법인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는, 2번째 회사 이후는 '해외진출기업 조사표B'를 사용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또한, 조사표가 부족했을 경우는, 표지의 '조사표를 보내는 곳 및 문의처'로 연락주시거나, 죄송하지만 부족한 것을 복사하여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측 출자자가 복수 이상 존재할 경우

당해 현지법인에 대해 일본측이 공동출자일 경우에 대해서는, 일본측 출자비율이 최대인 본사기업(동일출자의 경우는 간사기업)이 기입해 주십시오.
 따라서, 일본측 출자비율이 최대가 아닌 본사기업(동일의 경우는 비간사기업)은, 당해 현지법인의 기입은 필요없습니다.

※손자회사의 경우

당해 손자회사에 출자하고 있는 현지법인(자회사)에 대하여 기입해 주신 본사기업(상기, 일본측 출자자가 복수 이상 존재할 경우에 해당되는 기업)이, 손자회사에 대해서도 기입해 주십시오.
 다음과 같은 케이스에서는 C사 및 D사의 조사표를 A사나 B사가 작성하게 되겠습니다만, C사의 조사표를 A사가 작성했다면, D사에 대한 것도 아울러 A사가 작성해 주십시오.
 (예) 일본 국내 해외 해외



업종 분류

기입에 대해서는 '별표 1 업종 분류표'를 참조하여 해당되는 업종 난에 ○표를 기입해 주십시오.
 또한, 업종이 여러 갈래에 걸친 경우에는, 가장 판매액이 높은 업종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자 본 금

수권자본의 액수가 아니라, 불입필 자본금의 액수로 해당되는 난에 ○표를 기입해 주십시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출자금이란, 주식회사 등에서의 자본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조합 등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측 출자자가 출자 분담한 액수를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하십시오.
 또한, 엔환산할 때는, 귀사가 자본금 등으로 출자했을 때의 환율을 계속적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따라서, 실제로 증자, 감자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자본금은 외환율의 변동이런 이유로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현지법인명

현지법인명을 영문명 또는 ABC 등의 알파벳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중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 上海食品製造(有) → SHANGHAI FOODS PRODUCTION CO. LTD.

국가 분류

현지법인이 소재하는 국가 난에 ○표를 기입해 주십시오.
 또한, 홍콩은 중국과는 다른 국가 번호로 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해당되는 번호에 ○표를 해 주십시오.
 ※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대해 차지하는 일본측 출자 합계액의 비율에 해당되는 난에 ○표를 기입해 주십시오.

| | | | | | | |
|---------|---|---------------|---|---------------|---|--------------|
| 일본측출자비율 | 1 | 25% 미만 | 2 | 25% 이상 50% 미만 | 3 | 50% 이상 75%미만 |
| | 4 | 75%이상 100% 미만 | 5 | 100% | | |

※ 유급임원, 상시고용자의 합계를 기입해 주십시오. 상시고용자의 정의는 '조사표 기입 안내'를 참조해 주십시오.

| | | | | | | |
|------|---|---|---|---|---|---|
| 종업원수 | 만 | 천 | 백 | 십 | 일 | 명 |
| | | | | | | |

※ 현지법인이 소유하는 공장 및 점포(프랜차이즈 포함)·사업소수를 기입해 주십시오.

| | | | | |
|---------------------|---|---|---|---|
| 식품을 취급하는 공장 및 점포수 | 천 | 백 | 십 | 일 |
| 공 장 수 | | | | |
| 점 포 · 사 업 소 수 | | | | |

※ 현지법인의 식품부문의 판매액 및 매입액을 기입해 주십시오.
 '조사표 기입 안내'를 참조하여, 되도록 상세하게 기입해 주십시오.
 타국 통화의 엔환산은 '별표2 국가 분류·지역 분류표, 국가별 통화 환산표'를 보십시오.

| | | | |
|-----------|----|----|-----|
| 판매액 | 십억 | 백만 | 만엔 |
| 식품부문의 판매액 | | | 0 0 |
| 일본으로의 수출액 | | | 0 0 |

※ 현지법인을 복수 소유하고 있을 경우는 '해외진출기업 조사표B'를 사용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 | | | |
|-------------|----|----|-----|
| 매입액 | 십억 | 백만 | 만엔 |
| 식품부문의 매입액 | | | 0 0 |
|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 | | | 0 0 |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식품을 취급하는 공장 및 점포수

현지법인이 소유하는 공장 및 점포(프랜차이즈 포함)·사업소수를 기입해 주십시오.

- 공장수
현지법인이 소재하는 국내(지역내)에서 소유하는 제조나 가공의 공장·시설수를 기입해 주십시오.
- 점포·사업소수
현지법인이 소재하는 국내(지역내)에서 소유하는 상품의 판매시설(프랜차이즈 포함), 사무소수를 기입해 주십시오.

▶ 판매액

현지법인의 식품부문 또는 식품에 관한 판매액에 대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연도간 실적은 2007년도에 대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결산기의 변경 등으로 연도간 실적을 정확히 기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적당하게 귀사의 구분에 따라 기입하셔도 됩니다.

- 식품부문의 판매액
식품부문 또는 식품에 관한 2007년도의 판매 실적을 기입해 주십시오.
- 일본으로의 수출액
'식품부문의 판매액' 중에서 일본으로 수출한 금액(자사 명의로 통관 수속을 밟아 수출한 금액)을 기입해 주십시오.

▶ 매입액

현지법인의 식품부문 또는 식품에 관한 매입액에 대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연도간 실적은 2007년도에 대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결산기의 변경 등으로 연도간 실적을 정확히 기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적당하게 귀사의 구분에 따라 기입하셔도 됩니다.

- 식품부문의 매입액
식품부문 또는 식품에 관한 2007년도의 매입 실적을 기입해 주십시오.
-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
'식품부문의 매입액' 중에서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금액(자사 명의로 통관 수속을 밟아 수입한 금액)을 기입해 주십시오.

▶ 일본측 출자비율

현지법인인 현재의 귀사를 포함한 일본측 출자비율로 해당되는 난에 ○표를 기입해 주십시오.

또한, 손자회사의 경우는, '자회사'로의 일본측 출자비율×'자회사'의 '손자회사'로의 출자비율(간접출자비율)을 일본측 출자비율로 해 주십시오.



▶ 종업원수

고용 상황에 대하여, 2008년 3월 31일 현재의 유급임원, 상용고용자의 상황을 기입해 주십시오. 기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기입 가능한 시점의 상황을 기입해 주십시오.

상용고용자란, 정사원, 준사원, 아르바이트 등의 호칭에는 상관없이 1개월을 넘는 고용 계약자와, 가장 가까운 시점의 이전 2개월에 있어서 각각 18일 이상 고용한 자를 말합니다.

또한, 현지법인이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불문합니다.

설문은 이상입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신용 봉투에 조사표 A, B 를 동봉하여 투함해 주십시오.

별표 1 업종 분류표

| 번호 | 업종명 | 내용 예시 |
|----|-----------------|----------------------------------------------------------|
| 1 |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 축산 식료품, 수산 식료품, 정곡·제분, 조미료 등 청량음료, 주류 등 |
| 2 | 음료 제조업 | |
| 3 | 도매업, 소매업 | 각종 상품 도매업, 기계기구 도매업 등 각종 상품 소매업, 자동차 소매업, 음·식료품 소매업 등 |
| 4 | 소매업 | |
| 5 | 음식점, 숙박업 | 일반음식점(식당, 레스토랑 등), 유흥음식점(요정, 술집, 맥주집 등) 여관, 호텔 등 |
| 6 | 숙박업 | |
| 7 | 기타 업종 | |

주 :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주요한 업종별 분류와 동일한 것으로 해 주십시오.

별표 2 국가 분류·지역 분류표, 국가별 통화 환산표

| 번호 | 국가·지역명 | 통화 단위 | 엔환산치 |
|----|--------|---------|-------|
| 01 | 중국 | Yuan | 15.48 |
| 02 | 홍콩 | Dollar | 15.09 |
| 03 | 대만 | Dollar | 3.55 |
| 04 | 대한민국 | Won | 0.13 |
| 05 | 싱가포르 | Dollar | 78.13 |
| 06 | 말레이시아 | Ringgit | 34.25 |
| 07 | 태국 | Baht | 3.41 |
| 08 | 인도네시아 | Rupiah | 0.01 |

| 번호 | 국가·지역명 | 통화 단위 | 엔환산치 |
|----|--------|--------|-------|
| 09 | 필리핀 | Peso | 2.55 |
| 10 | 베트남 | Dong | 0.01 |
| 11 | 라오스 | Kip | 0.01 |
| 12 | 캄보디아 | Riel | 0.03 |
| 13 | 미얀마 | Kyat | 20.98 |
| 14 | 브루나이 | Dollar | 78.13 |
| 15 | 인도 | Rupee | 2.85 |

주 : 홍콩은 중국과는 다른 국가번호로 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별표 3 식품의 대상범위

| 대상이 되는 것 |
|---------------------------------------------------------------------------------------------------------------------------------------------|
| 정곡류, 야채(신선·냉장), 과일(신선·냉장), 수산물(신선·냉장·냉동), 축산물(신선·냉장·냉동), 가공식품 등 사람이 일상적으로 음식으로서 섭취하는 것이 대상이 됩니다. 또한, 수산물 및 축산물에 대해서는 살아 있는 것, 활어를 포함합니다. |

| 대상이 되지 않는 것 |
|------------------------------------------------------------------|
| 종자용인 것, 사료용 등 식용 이외로 만들어진 것, 향료, 약사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은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